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5. 9. 12.
운영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2005년 8월 26일 김성렬의원의 7인 발의
-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9월 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2005년 9월 5일 제1차 운영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박승석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에 70,000원에서 1일에 100,000원으로 현실화 함(안 제3조 제2항)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 김찬재)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는 2005. 8. 5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회기수당을 현실화 한 것으로 다른 이견이 없음.

4. 審査結果 : 原案議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	-----

제안년월일 : 2005. 8. 26

제안자 : 김성렬 의원외 7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2005. 8. 5. 대통령령 제18991호)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1일에 70,000원에서 1일에 100,000원으로 현실화 함(안 제3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회기수당은 1일에 70,000원으로”를 “회기수당은 1일에 100,00원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운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 (생략) ② <u>회기수당은 1월에 70,000원으로</u> 하여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3조(회기수당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u>회기수당은 1월에 100,000원으로</u> -----.